

협동조합 설립인가 공고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- 117호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(설립인가) 및 동법 시행령 제8조(설립인가)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3. 5. 7.

중소기업청장

가. 인가번호 : 제307호

나. 조 합 명 : 한국ICT융합사업협동조합

다. 소 재 지 :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297번지 2층

라. 대 표 자 : 김 창 식

마. 인 가 일 : 2013. 5. 1.

바. 업무구역 : 전국